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2677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7. 12.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8,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가. 지체(하지)장애 3급인 원고는 2015. 1. 8. 배기량 75cc인 쏘울 EV 전기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5. 당시 [redacted] [redacted]구 B, C호에서 한 세대를 이루고 있던 배우자인 D(당시 세대주)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분 1%를 양도하였다. 그에 따라 2017년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가 99%, D이 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7. 5. 4. 질병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redacted]도 [redacted]군 E로 원고를 세대주로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6. 6.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과세기간(2017. 1. 1. ~ 2017. 12. 31.)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23,500원을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장애인임을 확인하고 원고와 D이 세대를 분리하기 전의 기간(2017. 1. 1. ~ 2017. 5. 4.)의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아래와 같이 2017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78,7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납세자	소유차량	과세기간	자동차세 (본세)	지방교육세	합계
A	F	2017.05.05.~2017.12.31.	60,610원	18,180원	78,79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경색 치료를 위하여 D과 세대를 분리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원고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달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감면규정은 장애인의 배우자가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만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장애인 본인이 공동명의인인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더라도 장애인 본인이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실제로 장애인 본인만이 차량을 이용하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차량과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인 점, 그에 따라 가족 중에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있는 사람은 세대를 전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달리하면서도 자신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일부 지분을 장애인인 가족의 명의로 해 두고서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을 주장하기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점,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부당하게 자동차세를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이 마련해 둔 최소한의 장치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동사유를 불문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와 장애인 본인이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세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은 2017. 5. 4.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여 등재되어 있으므로, 세대분리일인 2017. 5. 4.부터는 장애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원고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의 100%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도, 원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지분 1%를 D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그 지분 양도에 따른 불이익은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고가 스스로 부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덕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판사 정세진

판사 강정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 특례제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redacted]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끝.